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
 주거복지로드맵	배포일시	2018. 5. 6(일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주택기금과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황윤언, 사무관 강치득, 주무관 김동규 • ☎ (044) 201-3351, 3343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‘정부, 분양대행 전격금지’보도 관련

- 청약 관련 업무는 투명한 절차 이행, 청약신청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적법하고 적절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
 - 주택공급규칙(제50조제4항)은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('07.8월~)

- 그런데, 미등록 업체가 분양업무를 대행하면서 시장에 혼란*을 주고 있어,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행정지도**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성 있는 업체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계기관(지자체 등)에 지도감독을 요청한 바 있음
 - * (사례) 분양대행사가 임의로 당첨자를 변경, 부실한 상담에 따라 관련 민원 증가, 관련 서류 미보관 또는 임의 폐기 등
 - ** 주택청약 교육과정 개설(3월, 건설사 관계자 대상), 주택관련 법·제도 설명회(한국주택협회, 3.15) 등을 통해 교육과 지원 병행 추진중

- 앞으로도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청약신청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등록업체가 관련 업무를 이행토록 유도해 나가겠음

* 현재 일부 사업주체는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업체 활용중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경제 5.6) >

- ◆ 정부 분양대행 전격금지.. 아파트 분양현장 대혼란
 - 건설사가 청약 상담, 부적격 단속까지 떠맡아야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강치득 사무관(☎ 044-201-33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